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호	2898
-----------	------

2021년 11월 2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1. 제안경위

- 2021. 10. 15.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2021. 10. 20. 회부)

## 2. 제안이유

-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안 제4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단서 신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 2026년 12월 31일----- ---.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4. 검토의견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도시재생의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나. 도시재생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 도시재생기금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17.3.23. 제정·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및 지역자생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음.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25%<sup>1)</sup>로 조성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사업지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거점공간 매입·활용, 주민협의체 추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용도로 기금이 사용되고 있음. (\*붙임1.

1) 과밀부담금(도시계획국에서 부과)의 50%는 국비, 50%는 서울시(균형발전특별회계 25% / 도시재생기금 25%)로 귀속됨.

도시재생기금 사업별 용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관리 비용
3.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의 범위안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7. 사업기간이 종료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8. 도시재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10. 차입금 및 이자 상환
11.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용

○ 지난 3년간('18~'20년) 총 68개 도시재생사업에 385억 4,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1년에는 9개 사업, 93억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운용중임.

(※붙임2. 기금 사업별 집행현황 참조)

○ '20회계연도 기금조성 결산액은 271억 원이고,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도시재생기금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년 도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	수입액 ㉢	지출액 ㉣	
2022년	24,024	5,990	8,474	2,484	30,014
2021년	27,100	△ 3,076	6,854	9,930	24,024
2020년	6,890	20,210	33,324	13,114	27,100
2019년	7,899	△ 1,009	14,753	15,762	6,890
2018년	-	7,899	22,249	14,350	7,899

### 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

-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최근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존치·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26년도까지 반영되어 있음.

〈도시재생기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수입	2,225	325	385	445	505	565
지출	125	25	25	25	25	25
예치금	2,100	300	360	420	480	540

- 또한 현재 수행 중인 기금사업들은 앵커시설 부지매입 및 사업기간이 종료된 지역의 사업, 추진의 유연성이 높게 요구되는 사업들로서, 기금 폐지 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업 구분	일반예산 편성추진 시 문제점	세부사업명
앵커시설 부지매입	차년도 예산반영 시, 적정매입시기를 놓쳐 후속사업이 지연 및 가격상승 가능성 존재	서마장상생센터, 골목길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등
사업기간이 종료된 지역의 사업	사업종료 이후에도 주민 중심의 마을기업 등 운영이 필수적이나, 일반예산 체계에서는 법적 지원근거 미흡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사업 등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	소송·민원 등 갈등이나 계획변경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이월·불용 등의 부담 발생	선교사주택 시민공간 조성사업, 용산 Y-Valley사업 등

- 종합하면, 유연성이 높게 요구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기금이 필요하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기금의 조성재원인 과밀부담금은 부과시점(건축허가 시)과 납부시점(사용 승인 시)의 차이, 건설경기의 영향 등에 따라 징수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 재원<sup>2)</sup>이 다양하고 지속적·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바, 정비사업 현금기부 채납 등을 도시재생기금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재원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과밀부담금 징수현황 및 도시재생기금 귀속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 계	'18년	'19년	'20년	'21년(10월)
과밀부담금	323,272	88,816	40,004	132,568	61,884
기금 귀속액 (25%)	80,818	22,204	10,001	33,142	15,471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지현
연 락 처	02-2180-8216
이 메 일	cjh1786@seoul.go.kr

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차입금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출연금
6.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붙임1**

**도시재생기금 사업별 용도**

**■ 2021년 기준: 총 9개 사업**

연번	사 업 명	조례상 기금용도별 구분								
		① 공가매입 ·활용비	② 임대주택 건설비	③ 전문가 활용비	④ 기반시설 설치·운영비	⑤ 문화유산 보존비	⑥ 조사 연구비	⑦ 마을기업 사전기획·운영비	⑧ 주민협의체 사업비	⑨ 포괄 규정
1	세운2단계대체주차장운영				○					
2	선교사주택 시민공간조성				○					
3	영등포 산업문화유산 재생 공모사업					○				
4	골목길 양커시설 조성				○					
5	도시재생지원기관 운영			○						
6	도시재생기업(CRC)지원						○			
7	우당이회영기념관 조성				○					
8	잡수리코디네이터운영			○						
9	전통시장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양커시설 부지 매입				○					

## 붙임2

## 도시재생기금 사업집행현황

### ■ 연도별 기금 사업(비용자성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건 / 백만 원)

구분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10월)
건수	77	21	32	15	9
집행계획액	100,002	33,887	42,797	13,951	9,367
집행액	43,248	20,632	11,171	6,746	4,783
집행률(%)	43.2%	60.8%	26.1	48.3%	51.2%

### ■ '21년: 총 9개 사업(2021년 10월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 출 사 업	지출계획	'21.10 현재		결산전망('21.12)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총 계	9,367	4,783	51.1%	5,408	57.7%	
1	세운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관련 대체주차장 임차 운영	133	97	72.9%	119	89.5%
2	선교사주택시민 개방공간 조성	800	-	-	-	-
3	영등포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 공모사업	600	-	-	600	100.0%
4	골목길재생 사업지 내 앵커시설 조성	2,000	-	-	-	-
5	도시재생 지원기관 운영	300	-	-	-	-
6	우당 이회영 기념관 조성	80	65	81.2%	68	85.0%
7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부지매입	3,600	3,600	100.0%	3,600	100.0%
8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1,636	822	50.3%	822	50.3%
9	집수리 코디네이터 운영	218	199	91.2%	199	91.2%

## ■ '20년: 총 15개 사업

(단위 : 백만원, %)

세 출 사 업		지출계획	집행액	집행률	부진 사유
총 계		13,951	6,746	48.3%	
1	서마장 상생센터 조성사업	3,000	384	12.8%	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소송)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으로 후속 업무추진 지연
2	용산 Y-Valley 제조·유통 플랫폼 조성	300	-	-	산자부, 용산구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단계
3	영등포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 공모사업	2,200	1,176	53.5%	구조보강계획 변경으로 민간 사업 자금조달 지연으로 공기 연장
4	시민의 하늘마당, 서울옥상 조성	1,028	1,028	100%	
5	세운 5-2구역 내 공공임대상가 건립	700	700	100%	
6	세운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 관련 대체주차장 임대 운영	150	133	88.7%	
7	해방촌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810	810	100%	
8	홍제역 일대 창업레지던스 조성	538	473	87.9%	사고이월 42백만원 (구조안전진단 용역)
9	선교사주택 및 부속토지 시민공간 조성 공사	300	-	-	조합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선교사주택의 보전을 위한 협의중
10	세운2단계 '진양상가 4층 사우나 거점공간' 매입	898	295	32.9%	매도자의 계약사항(각종 권리관계 말소 등) 미이행으로 매매대금 지급 보류중
11	우당 이회영기념관 조성	845	370	43.8%	사고이월 461백만원 (공사, 전시 등)
12	후암동 골목길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공가매입	671	661	98.5%	
13	후암동 골목길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80	11	13.8%	설계자 선정 방식 변경에 따른 용역 계약 지연 (사고이월 50백만원)
14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2,231	513	23.0%	코로나19로 기업의 사업계획 변경 및 신규선정 공모 연기
15	정동 역사재생(주민기획 공모지원) 사업	200	192	96.0%	



## ■ '19년: 총 32개 사업

(단위 : 백만원, %)

세 출 사 업		지출계획	집행액	집행률	부진 사유
합 계		42,797	11,171	26.1%	
1	스마트 도시재생 시범대상지선정 및 기본설계구상(안) 마련	300	-	-	관계기관 협의로 인한 지연
2	골목길재생사업	12,236	4,865	39.8%	
3	태화관길 도시재생 명소화사업 보행친화공간 조성	1,000	1,000	100%	
4	신산업플랫폼 구축을 위한 임대형 거점공간 조성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1,324	-	-	관계기관 협의로 인한 지연
5	마장플랫폼 앵커시설 부지 매입	3,724	-	-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매입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연
6	서마장 앵커시설 조성	1,305	-	-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지연
7	세운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 관련 대체 주차장 임대 운영	500	333	66.6%	
8	사직2구역 보존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앵커시설 등 매입비, 설계비 및 공사비)	1,500	138	9.2%	대법원 패소로 정비구역 환원('19.4.)되었으며, 조합의 반대로 지연
9	영등포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 공모사업	2,170	800	36.9%	기금 수입액 부족으로 '20년 편성 추진
10	시민의 하늘마당, 서울옥상 조성	2,400	510	21.3%	시범사업 대상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 지연
11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500	-	-	설계공모 지연
12	서촌지역 활성화 거점 조성	3,900	-	-	관계기관 협의로 인한 지연
13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부암 앵커시설 조성 이화 앵커시설 매입)	1,100	264	24.0%	민원으로 인한 규모관련 협의 조정으로 지연
14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재생 거점공간 매입)	4,000	547	13.7%	기금 수입액 부족에 따른 기금 미배정
15	역사도심 생활유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100	88	88.0%	
16	역사도심 특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400	343	85.8%	

세 출 사 업		지출계획	집행액	집행률	부진 사유
17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65	45	69.2%	
18	채석장일대 명소화사업 국제설계공모	150	-	-	광화문광장 사업 지연으로 부지확보 MOU 미체결되어 미집행
19	창신송인 채석장 전망대 신축공사	60	59	98.3%	
20	낙산성곽길 정비사업 내 경로당 이전에 따른 전세금 지원	400	-	-	경로당 대체시설 물건지 미확보
21	해방촌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1,310	500	38.2%	
22	광화문일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	300	257	85.7%	
23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관련 용역	60	58	96.7%	
24	기동 정세권 선생 아카데미·토론회 추진	100	10	10.0%	사업 종료로 인한 집행잔액
25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 사업 (주민 기획공모 확대 지원)	300	165	55.0%	
26	창신송인 소잉마스터 아카데미	150	141	94.0%	
27	세운상가군 거점공간 관리 운영 용역	575	575	100%	
28	정동 역사재생사업(기획공모 지원)	600	236	39.3%	정동내 가로환경개선, 시설유지 등에 대한 시민들의 가꿈공모사업 참여 저조 및 기금 수입액 부족에 따른 미배정
29	창신송인 도시재생 협력사업 상상패션런웨이 추진	100	98	98.0%	
30	창신송인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운영	536	8	1.5%	도서관 운영주체 선정지연 및 '19년 12월 실내공간 조성 완료로 운영비용 미집행
31	창신송인 도시재생기업(CRC)지원	62	54	87.1%	
32	도시재생기업(CRC)지원	1,570	77	4.9%	'19년도 총 3차에 걸쳐 12개 기업 선정하였으나, 2,3차 선정이 12월로 교부금 신청 및 지출 기간이 촉박하여 지출되지 못함

## ■ '18년: 총 21개 사업

(단위 : 백만원, %)

세 출 사 업		지출계획	집행액	집행률	부진 사유
합 계		33,887	20,632	60.8%	
1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	160	141	88.1%	
2	골목길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500	500	100%	
3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재생사업	2,316	2,162	93.3%	
4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	1,007	1,007	100%	
5	정동 역사재생사업	878	510	58.1%	
6	세운상가 재생사업	5,567	4,352	78.2%	
7	한양도성내 역사문화 탐방로 재생	293	261	89.1%	
8	을지로 중심 인문보행도시 조성	600	358	59.7%	
9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6,813	1,336	19.6%	빈집 3개소 매입 후 추가매입 협의 지연으로 미집행
10	육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관리사업	2,600	-	-	매물 가격 협상 어려움으로 미집행
11	주거환경 관리사업	4,000	3,118	78.0%	
12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1,868	1,868	100%	
13	창신송인 채석장 전망대 조성사업	230	162	70.4%	
14	창신송인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1,115	1,056	94.7%	
15	서울형 도시재생사업활성화 추진	4,900	2,981	60.8%	
16	이용자 맞춤형 시제품제작소 구축	120	120	100%	
17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460	319	69.3%	
18	기농 정세권 선생 기념전시회	100	79	79.0%	
19	창신송인 소잉마스터 아카데미	250	201	80.4%	
20	서울 백년주택 선정사업	10	1	10.0%	관계기관 협의로 인한 지연
21	창신송인 도시재생기업(CRC)지원	100	100	100%	

**① 기금의 설치 및 제한**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도시재생기금의 설치)**

-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으로 통합운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한다
    -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2. 기금 설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②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③ 기금의 용도

---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관리 비용
  3.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의 범위안 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7. 사업기간이 종료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8. 도시재생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10. 차입금 및 이자 상환
  11.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 8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용
-

## ④ 기금의 재원

---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차입금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기부금품
6.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 ⑤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배분

---

### 수도권정비계획법 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차입금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기부금품
  6.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